

## 환경친화축산농장 제출 서류

\* 「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 운영지침」 서식 1~6 참고

- 1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
- 2 사업개요  
\* 가축의 종류, 사육두수, 축사 및 부지 면적, 농장관리계획, 농장 주변의 주거 현황 등
- 3 가축분뇨 처리현황  
\* 가축분뇨처리의 능력 및 방법, 가축분뇨처리의 장비 및 시설, 퇴비·액비화 물량, 농경지 확보면적 등
- 4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 사진
-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- 7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
- 8 안전관리인증서(HACCP) 사본

# 환경친화축산농장

## 슬기로운 축산생활!!



**환경친화축산농장 신청서 접수**  
 우편 (30127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7층  
 전자우편 farm@lemi.or.kr  
 팩스 044-865-9873  
 문의처(사업담당자) 044-550-5062

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·이용하는 농장은 **환경친화축산농장**으로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.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) 제9조 「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자원화 규칙") 제7조 및 「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」(농식품부 고시, 이하 "지정기준")



**축산환경관리원**  
Livestock Environmental Management Institute

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, 7층(나성동 752)  
TEL. 044-550-5000 FAX. 044-865-9871



**농림축산식품부**



**축산환경관리원**

## 환경친화축산농장이란 무엇인가요?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고, 가축분뇨를 적절히 관리·이용하는 데 기여하는 축산농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농장을 말합니다.

## 축산농장 지정제의 끝판왕!!

엄격한 지정기준을 준수하는  
최상위 지정제도 "환경친화축산농장"  
명품농장에 도전해 보세요.



##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~

### 지정 대상

- ☑ 소(젖소 포함)·돼지·닭을 사육하면서 안전관리인증(HACCP)을 받고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·이용하는 농장

- 대상축종: 소(젖소 포함), 돼지, 닭
-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
-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농장
-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인증된 안전관리인증농장

### 지정 절차

- ☑ 서류검토, 현장평가 후 축산환경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(소비자·환경단체 등)로 구성된 지정심의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에서 지정 여부 판단



※ 서류 보완 요청 시 7일 이내 보완서류 제출

## 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사항 및 사업 신청

### 지원 사항

- ☑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 (유기 축산물) 20% 추가 지원
- ☑ 친환경축산 위탁교육 등 주기적 교육 실시 등
- ☑ 「가축분뇨법」 제9조제3항 및 자원화 규칙 제6조에 따른 지원

#### 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

- 축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
- 「가축분뇨법」 제41조에 따른 보고·검사의 면제
- 환경친화축산농장의 환경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·상담 및 교육
-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

### 사업 신청

- ☑ 축산환경관리원(환경친화부)에 우편, 전자우편, 팩스로 신청[신청서(서식 1) 및 첨부서류 제출]

우편 (30127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7층

전자우편 farm@lemi.or.kr

팩스 044-865-9873

문의처(사업담당자) 044-550-5062

#### 신청시기: 연중

처리기간: 신규 지정 접수 후 50일  
(방역 사정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)

변경 신고 접수 후 10일

## 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해 궁금한게 많아요~



Q1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신청 및 구비서류와 심사기준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(<https://www.lemi.or.kr/>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주요사업/환경친화적안심축산업 실현 사업/환경친화축산농장



Q2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만 신청가능한가요?

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 제4항에 따라 인증된 안전관리 인증(HACCP)을 받은 농장만 신청 가능합니다.

HACCP 안전관리인증: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

Q3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 운영지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(<https://www.lemi.or.kr/>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자료실/관련 법령 및 지침



Q4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유효기간이 있나요?

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후관리(연 1회) 시 지정기준 미달인 경우 지정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.



Q5 사후관리 주기와 점검항목은 어떻게 되나요?



연 1회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며, 최초 지정 시 평가항목과 동일하게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합니다.

대상 제외 사후관리 점검결과가 우수(90점 이상)한 경우 차년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

Q6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시 추가적인 지원 내용은 없나요?

사후관리 우수농가에 대해 조경수 식재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지원 규모와 항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